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20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양부남 · 조계원 · 안도걸
민병덕 · 김문수 · 최혁진
박정현 · 박수현 · 이강일
정준호 · 정진욱 · 강준현
이광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등 전국에서 스톱킹 피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스톱킹 범죄 112신고 건수도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은 스톱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한차례 연장을 통하여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2개월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단서 중 “잠정조치에 대하여”를 “잠정조치는”으로, “차례에 한정하여”를 “차례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으로, “3개월의”를 “기간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생 략)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 ----- ----- ----- ----- ----- ----- ----- ----- ----- --- <u>잠정조치는</u> ----- <u>차례</u> <u>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u> <u>조치는 한 차례만</u> --- <u>기간의</u> -- -----.